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29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0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5년 0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6월 17일 상정· 의결(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시민건강국장)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 근거를 추가하고, 상위법 범위에서 정한 운영시간 명시 및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 상위법령 범위에서 정한 운영시간 명시(안 제2조)
- '공공 야간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용어 변경(안 제명, 제2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약사법」 제21조의3
- (2)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1조의6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혐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3. 27. ~ 4. 16.)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채선화(☎2133-7757)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 1.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현황 및 「약사법」 일부개정 시행
- 서울시 '공공 야간약국'은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1) 지난 2020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공공 야간약국 연도별 운영현황>

구분	2025년 (5.19. 기준)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9.16.~)
건수	95,025	196,685	210,547	203,014	177,994	45,469
월 별 판매 평 균	500	497	538	485	420	419
참여약국 수 (지정취소 포함)	38개소	33개소	35개소	37개소	40개소	31개소
운영약국 수	38개소	33개소	33개소	34개소	36개소	31개소
운영시간	22시~익일1시					
지원기준	시간당 4만원	시간당 4만원	(~6.30) 전년과 동일 (7.1~) 시간당 3.5만원	4,300원(된	판매 건당 지급 명일). 5,600원(토	일공휴일)
예산	1,445,400천원 (국비50%, 시비50%)	1,329,720천원 (특별조정교부 금)	1,237,162천원	1,560,000천원	1,422,000천원	945,000천원

[※] 자료: 보건의료정책과 제출자료(2025. 05. 27.)

※ 자료: 23년 7월 1일부터 지원기준 변경 사유 : 기존 품목별 건당 지원방식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약국 기본 운영비 보존

^{1)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quot;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quot;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7587호, 2020. 5. 19., 제정]

○ 그런데 2023년 4월 18일에 「약사법(이하: 법)」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신설됨(법 제21조의3).

「약사법」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 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 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①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그리고 이 법 제21조의3 개정규정이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법제21조의3제1항),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법 제21조의3제4항).
- 이와 관련, 2024년 1월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25
 개 자치구에 공문을 발송(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1)하여
 "2025년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회신을 요청한 바 있는데.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사업 안내 및 참여의사 회신 요청 공문개요>

- 사업명 :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 사업예산 : 미정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야간 3시간의 운영 경비 지원 등
 - * (야간 3시간) : 22시~익일 1시(미정), (시간당 인건비) : 4만원(예정)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지방비 매칭 추진)
- ※ 자료: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1(2024. 1. 3.) 공문내용 일부 발췌.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모두 25년부터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의사를 회신함.
- 2.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시장 제출(처리결과: 미처리)
- 이에, 서울시는 현행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 야간약국" 및 "야간시간대" 등의 용어를 상위법과 통일하고, 25년부터 기존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사업을, 국가사업인 '공공심야약국'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²)하고자 지난 2024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공공

²⁾ 보건복지부(2024. 09. 13.) 2025년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예산 사전통보(가내시).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7)」을 시장 제출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시장제출 조례안(의안번호 2267)」에 대한 사전심사(2024. 11. 28.) 과정에서, 동 조례안은 상위법과 달리 ①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의 자격 범위를 '약사'로만 한정하고 있고, ②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에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결국 해당 악건을 미처리(상정 보류)한 바 있음.

< 상위법과 비교 >

구 분	「약사법」	시장 제출안 (의안번호 2267)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자격의 범위	"약국개설자" 약사 또는 한약사	약사	
심야시간대 운영시간	"매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및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 공휴일은 상위법과 개정안이 동일함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자격의 범위 관련) 현행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20조제 1항),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1조의3제2항)3).

예산총액(보조율): 국비 4,818백만원, 지방비 4,818백원(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인건비 시간당 4만원(일 최대 3시간), 365일 운영 등 고려

서울(33개소) 예산액: 1,445,400,000원(국고보조금 722,700,000원, 순지방비 722,700,000원)

^{3) 「}약사법」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 ⑥ <생략.>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 · 운영 등) ① <생략.>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그런데 당시 시장 제출안(의안번호 2267) 제2조제1호 정의에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현행조례와 같음)고 규정하여, 상위법과 달리 공공심야약국으로 신청 및 지정받을 수 있는 약국개설자의 범위를 '약사'로 한정한 문제가 있었음.
-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 또, 현행법에서는 공공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법 제21조의3제3항), 보건복지부령에서 말하는 심야시간 대의 운영시간은 "매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함⁴⁾⁵⁾.
- 그런데 당시 시장 제출안(의안번호 2267)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평일" 심야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6)로만 정하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 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4) 「}약사법」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⑧ <생략.>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⁵⁾ 보건복지부(2024. 09. 13.) 2025년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 예산 사전통보(가내시).

⁻ 지원기준 : 인건비 시간당 4만원(일 최대 3시간), **365일 운영** 등 고려

^{6)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고 있어 이 경우, 상위법과 달리 조례에는 일요일이 운영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함.

2 개정안의 내용

○ 이번 시장 제출 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로 바꾸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여 상위법과 동일하게 ① '한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안 제2조, 제4조), ②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안제2조)로 규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u>조례</u>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일 야간</u>	제1조(목적) <u>심야시간대</u>
<u>시간대와 토요일</u>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	
을 해소하고, <u>약사</u> 의 복약지도	<u>약국개설자</u>
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u>운영하는</u>	「약사법 _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u>야간약국</u>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 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 법」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 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 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 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 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u>야</u> <u>간약국</u>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 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 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u>노</u> <u>력한다</u>.
 - ② 시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	• 운영
	되는 공공심	야약국-		
제	2조(정의) -			
	1. "공공심여	야약국"(이하	"심ㅇ
	*1 7 7 1 -1	· · · · ·		•

-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 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 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 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 휴일의 운영시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 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10시 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심야</u>
약국
<u>노</u>
럭하여야 한다.
② 심야약국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 국 관련 단체 · 협회 등의 자발 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게 야간시 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 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 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심야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u>上</u>
	력하여야
	③
	노력하여야 한다.
제	4조 <u>(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u>
	① 심야약국으로 지정받
	<u>으려는 약국개설자</u>
	<u>심야약국을</u>
	②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u>의 범위에서 지원</u>
	<u><</u> 삭 제>

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 약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

하다.

- ② 시장은 <u>야간약국</u>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u>야간약국</u>의 운영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u>소관상임위원회</u>에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u>야간약국</u>이 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u>심야약국</u>
③ 실야약국
<u>소관 상임위원회</u>
 메6조(홍보) <u>심야약국</u>

- 다만, 제출된 시장 조례안 일부 조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먼저, 개정안 제1조는 공공심야약국에서의 복약지도를 "약국개설 자"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정 의견 >

수 정 의 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약사</u>
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된
<u>사항과 그 시행</u> 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런데 약국의 관리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7) 공공심야약국에서의 복약지도8)는 실제로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국개설자를 대신해 지정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9)가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수정)이 필요함.
- 또한 법제처(2022)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¹⁰⁾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목적규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어야한다는 입장임(다음 페이지 참조)¹¹⁾.

^{7) 「}약사법」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8) 「}약사법」제2조(정의) 12. "복약지도(服藥指導)"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50조(의약품 판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9) 「}약사법」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약사법」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 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5(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 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¹¹⁾ 법제처(2022), 2022년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87.



임번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부 정하는 경우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종합의견

- 2023년 4월 18일에 「약사법(이하: 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 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법 제21조의 3).
- 그리고 이 법 규정(2024년 4월 19일 시행)에 따라 "시·도지 사" 등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이에. 서울시는 현행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 야간약국" 및 "야간 시간대"등의 용어를 상위법과 통일하고, 25년부터 기존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국가사업인 '공공심야약국' 사업으로 전화 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2024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67), 을 시장 제출한 바 있음.
- 그런데, 당시 시장제출 조례안(의안번호 2267)」은 상위법과 달리 ①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의 자격 범위를 '약사'로만 한정 하고 있고. ②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에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미처

리(상정 보류)한 바 있음.

- 이번 시장 제출 조례안은 당시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여 상위법과 동일하게 ① '한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②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안 제2조)로 정확하게 규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임.
- 단, 개정안 제1조는 공공심야약국에서의 복약지도를 "약국개설자"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복약지도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약국개설자를 대신해 지정받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수정)이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수정안 요지: 「생략」

1. 수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 법규는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을 명확하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음.

2. 수정의 주요 내용

○ 이 조례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을 목적에 명확히 함(안 제1조).

Ⅵ.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생략」

Ⅷ. 기타 필요한 사항:「없음」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호 2829 제안년월일: 2025년 6월 17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목적규정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명확하게 표 시해 줄 필요가 있음.

2. 수정의 주요 내용

○ 이 조례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을 목적에 명확히 함(안 제1조).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시장제출안)	수정안(위원회안)
			(개정안과 같음)
<u>서울특별</u>	시 공공	<u>서울특별시</u>	
<u>야간약국</u>	지원 조례	공공심야약국 지원	
		<u>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
는 <u>평일</u>	야간시간대	는 심야시간대 및	<u>는 「약사법」 제21</u>
와 토요?	일 및 공휴	<u>공휴일에 의약품 구</u>	조의3 및 같은 법
일에 의약	부품 구입에	입에 따른 시민 불	시행규칙 제11조의
따른 시	민 불편을	편을 해소하고, 약	5에서 위임된 사항
해소하고	, 약사의	국개설자의 복약지	<u>과 그 시행에 필요</u>
복약지도	로 의약품	도로 의약품과 의약	한 사항을 규정함을
과 의약외	기품의 오남	외품의 오남용을 방	<u>목적으로 한다.</u>
용을 방지	기하기 위하	지하기 위하여 「약	
여 <u>운영</u> 호	하는 야간약	사법」제21조의3에	
<u>국</u> 의 지원	<u></u> 밀요한	<u>따라 지정·운영되는</u>	
사항을 구	구정함을 목	<u> 공공심야약국의 지</u>	
적으로 현	한다.	원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을 목적으로</u>	
		<u>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	제2조(정의) (개정안
에서 사용	용하는 용어	에서 사용하는 용어	과 같음)
의 뜻은	다음 각 호	의 뜻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공공 야간약국 "(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제20조 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 과 관광객 등(이 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 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 약품과 의약외품 을 제공하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 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 간대를 말한다.

와 같다.

- 1. "공공심야약국" 1. (개정안과 같음) (이하 "심야약국" 이라 한다)이라 「약사법」 제20 조에 따라 개설등 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 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 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 간에 의약품과 의 약외품을 제공하 기 위하여 서울특 별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 하다
 -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 간"이란 매일 오 후 10시부터 다 음 날 오전 1시

2. (개정안과 같음)

	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u>야간약국</u>	① <u>심야약국</u> -	(개정안과 같음)
의 지정을 통해 시		
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u>노력한다</u> .	<u>노력하여야 한다</u> .	
② 시장은 <u>야간약국</u>	② <u>심야약국</u> -	② (개정안과 같음)
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		
도록 <u>하여야</u> 한다.	<u>노력하여야</u>	
③ 시장은 약국개설	3	③ (개정안과 같음)
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		
발적인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도록 <u>노력</u>	<u>노</u>	
<u>한다</u> .	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	제4조 <u>(심야약국의 지</u>	제4조(심야약국의 지
<u>정 및 지원)</u> ① 시	<u>정 및 지원)</u> ①	정 및 지원) (개정
장은 <u>시민 등에게</u>	<u>심야약국으로</u>	안과 같음)

야간시간대 및 토요 일과 공휴일의 야간 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 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 국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 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생략)

리) ① 야간약국 근 무 약사는 「약사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 며, 시장이 정한 야 심야시간대 및 공휴 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

<u>지정받으려</u>	i는 역	부국
<u>개설자</u>		
		<u>심</u>
야약국을		

----- 심야 약국의 운영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관리하는 약사 또는

일의 -----

한약사-----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개정안과 같음) 제5조(야간약국의 관 제5조(심야약국의 관 제5조(심야약국의 관 리) ① 심야약국을 리) (개정안과 같 유)

야 한다.		
② 시장은 <u>야간약국</u>	② <u>심야약국</u>	② (개정안과 같음)
의 운영을 지도・감		
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u>야간약국</u>	③ <u>심야약국</u> -	③ (개정안과 같음)
의 운영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성과		
와 실적에 대하여	소관	
<u>소관상임위원회</u> 에	<u> 상임위원회</u>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시장은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개정안
<u>야간약국</u> 이 활발하	<u>심야약국</u>	과 같음)
게 운영될 수 있도		
록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한다.

제4조의 제목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심야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

간약국 운영자"를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로, "야간약국을"을 "심야약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을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야간약국의 관리)"를 "(심야약국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야간약국 근무 약사"를 "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로 하며,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 중 "야간약국"을 각각 "심야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야간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햀 개 정 아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서울특별시 공공심야약국 지워 조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일 야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 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법_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 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 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 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 약국"이라 한다)이라 「약사 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 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 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 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

휴일의 운영시간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

- 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2. "야가시간대"라 오후 10시부 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 저 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 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 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 력하다.
 - ② 시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 국 관련 단체 · 협회 등의 자발 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u>노</u>력한다.
- ① 시장은 <u>시민 등에게 야간시</u> 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 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서	울특별시	장(이하	"시장'	"o]
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
한 I	<u> 구.</u>			

2.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 영시간"이란 매일 오후 10시 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하다.

세3조(시장의 책무) ① <u>심야</u>
<u>약국</u>
<u>L</u>
력하여야 한다.
② <u>심야약국</u>
<u>汗</u>
<u>력하여야</u>
3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심야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 원) ① -- 심야약국으로 지정받 <u> 으려는 약국개설자</u>-----

- 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 한 <u>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u>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 제 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u>야간약국의</u>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시장은 <u>야간약국</u>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u>야간약국</u>의 운영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u>소관상임위원회</u>에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시장은 <u>야간약국</u>이 제6조(홍보) ---- <u>심야약국</u>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

<u>심야약국을</u>
②
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
<u><삭 제></u>
ll5조 <u>(심야약국의 관리)</u> ① <u>심야</u>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
약사
심야시간대
<u> 및 공휴일의</u>
② <u>심야약국</u>
③ 심야약국
<u>소관 상임위원회</u>
 NGス(すれ) 시아아그
& . U B

민에 게	홍보할	수	있다
1: 1/1		- 1	- スス ~ ・

-----.